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0가단5299552(본소), 2021가단5268067(반소) 판결
[구상금 ·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석

담당변호사 신동훈, 석경희, 김민경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병도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386,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2022. 6.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71,617,555원 및 그 중 19,937,370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51,680,185원에 대하여 2021. 11.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 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2,998,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QM5(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2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2017. 10. 2. 04:10 서울 양천구 D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 차량이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무단 보행하는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우측으로 진행하였으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 1차 사고 후 횡단보도 내에 넘어져 주저앉은 피해자를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을 하던 중 충격하여 역과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으로 2017. 12. 26.부터 2021. 11. 3.까지 피해자의 치료비 69,231,630원, 2021. 10. 27. 최종 합의금 100,000,000원 소계 169,231,630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피고로부터 2020. 1. 31. 치료비 명목의 12,998,26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 내지 3호증, 5호증, 6호증, 을 1호증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보행자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1차 사고 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우측 가변차로에 정차하였다. 1차 사고가 2차 사고 발생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점, 1차 사고 후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은 50% 이상이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69,231,630원 중 피고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84,615,815원(=169,231,630원×50%)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998,260원을 공제한 나머지 71,617,5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선행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주행차로에 정지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 의하여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차로 인하여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고 나아가 그 주변의 다른 차량이나 사람들을 충돌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선행차량 운전자가 정지 후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하였거나, 또는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지가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선행사고로 인한 경우 등과 같이 그의 과실에 의하여 비롯된 것이라면, 그 안전조치 미이행 또는 선행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정지와 후행 추돌사고 및 그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발생한 사고들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선행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후행사고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등 참조).

나)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1차 사고는 피고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잘못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 사실, 피고 차량이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차량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1차 사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상,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없었더라도 1차 사고로 피해자가 넘어진 것과,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발생한 2차 사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1차 사고는 물론 2차 사고에 대하여도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있고, 2차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되었다.

원고, 피고는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1차 사고를 야기한 원고 차량의 과실과 2차 사고를 야기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고,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차 사고 당시 피해자가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 횡단하였고, 야간이었고 비가 오던 날씨로 시야가 불량했던 점, 2차 사고에 대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중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 또는 후행 사고의 방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에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감속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그대로 직진한 점, 1차 사고보다는 2차 사고로 인한 피해가 훨씬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내부적 부담비율 또는 책임제한비율은 85:15로 봄이 상당하다.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상당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나) 보험자대위에 의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할 손해배상책임액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최종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169,231,630원 중 피고의 책임제한비율에 해당하는 25,384,744원(=169,231,630원×15%, 원 미만 버림)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998,260원을 공제한 12,386,4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1.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20. 6. 2.까지 지급한 치료비 65,871,270원 중 피고 책임제한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원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2,998,260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2020. 6. 3.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책임제한비율을 15%로 인정하면 공제 후 남는 금원이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차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고, 2차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로 인한 것이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1차 사고와 2차 사고에 관하여 과실이 없고, 가사 1차 사고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피고가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20. 1. 31. 원고에게 향후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과실비율을 조정하기로 하고 지급한 12,998,260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피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 사고를 초래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2차 사고와 관련하여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있고,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에 1차 사고 운전자의 과실은 2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담범위를 정할 때에 참작되어야 하고,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15%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본소 판단에서 피고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12,998,260원이 공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